

옥정중앙역 디에트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10년 적용?

다. 재당첨 제한(제54조)

Q 137 재당첨 대상 주택 및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은 적용하지 않음



국토부
주택청약
FAQ
137번

옥정중앙역 디에트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즉 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이므로
재당첨 제한 10년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 됩니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는 부부가 1순위 중복청약을 하게 되면 후접수분은 무효처리가 된다?

Q 140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 내 중복청약 시에 당첨 효력은?

중복청약으로 인한 당첨효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부부가 둘 다 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선 접수분의 효력을 인정함

참고4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동일 단지 신청여부와 무관)

※ 아래 표에서 부부 '둘 다 부적격'인 경우는 금번 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은 유효하되,
후 신청분은 무효처리,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

배우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재당첨제한X		재당첨제한O	재당첨제한X			
본인	특별공급 (규제지역)	특별공급에 해당			둘 다 부적격	배우자만 적격	둘 다 적격
	특별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둘 다 부적격			본인만 적격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특별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선 신청분 인정 후 신청분 무효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일반공급 (규제지역)	둘 다 부적격	배우자만 적격	둘 다 적격	둘 다 부적격	배우자만 적격	둘 다 적격
	일반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본인만 적격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본인만 적격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일반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둘 다 적격



국토부
주택청약
FAQ
140번

옥정중앙역 디에트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부부 중복 청약시 당첨 효력은
특별공급: 선 신청분 인정, 후 신청분 무효로 인정 됩니다. (동호 1개 배정)
일반공급(1,2순위): 부부 모두 적격 인정 됩니다. (동호 2개 배정)